

1.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통령의 특별사면
- ② 대통령의 서훈취소
- ③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 ④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정답 ②

해설 [×] 판례는 서훈취소를 통치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판례 서훈취소는 이미 발생된 서훈대상자 등의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관련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기본권의 보장 및 법치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5. 4. 23, 2012두26920).

- ①:[○] 현재 2000.6.1, 97헌바74.
- ③:[○] 대판 2004.3.26, 2003도7878.
- ④:[○] 현재 1996.2.29, 93헌마186.

2. 계획재량의 행사가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
- ㄴ.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 ㄷ.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정답 ④

해설 ㄱ.형량의 해태, ㄴ.형량의 흠결, ㄷ.오형량에 해당한다. 모두 계획재량의 통제법리인 형량명령 위반[형량하자]의 유형으로, 계획재량의 행사가 위법하게 되는 경우이다.

판례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ㄱ.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ㄴ.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ㄷ.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판 1996. 11. 29, 96누8567).

3.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가 된다.
- ② 부령은 총리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 ③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다.
- ④ 법규명령이 그에 따른 처분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 법규명령은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소의 개념이 없는 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는 등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이다.

판례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95. 6. 30, 93추83).

②:[×] 지문은 총리령이 부령보다 상위법령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총리령과 부령의 우열관계에 대하여는 효력동위설과 총리령우월설이 대립하고 있어 가장 타당한 지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객관식시험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더 확실한 ①을 골라야 한다.

③:[×] 부령에 규정된 제재적 처분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대외적 구속력을 부인하여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으로 본다.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구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므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0. 1. 25, 89누3564).

④:[×] 법규명령이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이른바 처분적 법규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두밀분교폐지조례사건: 대판 1996. 9. 20, 95누8003).

4.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정 지역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무효이다.
- ② 행정법령의 대인적 효력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③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④ 개인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정답 ①

해설 [X] 국가의 법령이 영토내의 일부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정지역을 규율한다고 하여 해당 법률이 무효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5.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은 성문법보다 우선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행정법의 법원이 아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 ④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행하여 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정답 ③

해설 [O]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안은 자치법규로서 위 조례안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유효한 조례로서 행정법의 법원에 해당한다(대판 2015. 5. 14, 2013추98).

판례 [1]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의 편성·실시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

[2] 교육부장관이 관할 교육감에게, 甲 지방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거절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조례안 의결에 대한 효력 배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국민의 기본권이나 주인의 권리 제한에서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내용이 법령의 규정과 모순·저촉되어 법률위위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2015. 5. 14, 2013추98).

- ①:[X] 우리나라는 영미법계 국가들처럼 선례구속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바, 판례에 대해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고, 불문법원이라고 하여도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에 그치므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성문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 ②:[X]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법규명령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 ④:[X]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9.6.25, 2008두13132).

6. 행정법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기간의 초일(初日)은 원칙상 산입하여 계산한다.
- ② 판례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③ 자연인의 공법상 주소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개소에 한정한다.
- ④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정답 ③

해설 [O] 주민등록법은 이중신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주민등록법 제10조 제2항), 자연인의 경우 행정법상 주소는 원칙적으로 1개소에 한정된다. 즉, 공법상 주소는 민법과 달리 복수의 주소지를 인정하지 않는 단수주의를 취하고 있다.

- ①:[X] 원칙적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57조 본문). **초일불산입의 원칙**
- ②:[X] 행정재산과 달리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헌재 1991. 5. 13, 89헌가97).
- ④:[X] 공법상 금전채권의 시효는 10년이 아니라 5년이 원칙이다(국가재정법 제96조).

7. 행정청의 재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다.
- ②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이다.
- ③ 숙박용 건물의 건축허가는 지속행위이므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 ④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는 재량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③

해설 [X] 숙박용건물의 건축허가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 일단 대규모 숙박업소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향락단지화된다면 그 허가를 함부로 취소할 수도 없고 인근의 다른 숙박업소의 허가신청도 거부하기 어려워 그 영업이 장기간 계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피고가 달성하려는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각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판 2005.11.25, 2004두6822). **행정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권장용도를 판매위락숙박시설로 결정하여 고시한 행위를 당해 지구 내에서는 공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리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사례.**

8.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담의 사후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기부채납인 부담이 위법하면 부담의 이행으로 행해진 사법(私法)상 매매 등도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
- ③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형식적 관련성이 있으면 족하고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으로부터는 자유롭다.
- ④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할 수도 있다.

정답 ④

해설 [○] 대판 2009.2.12, 2005다65500 참조.

판례 수의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행정청이 수의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9. 2. 12, 2005다65500).

- ①:[×] 법률의 명문규정, 사후부관의 유보, 상대방의 동의, 사정변경 등이 있으면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대판 2007.12.28, 2005다72300).
- ②:[×]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9.6.25, 2006다18174).
- ③:[×]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대판 1997.3.14, 96누16698).

9.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집행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 ② 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명령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다.
- ③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에 모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
- ④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행위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지만 후행행위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한다.

10. 행정행위의 하자과 관련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법률상 청문을 요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청문절차를 결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ㄴ.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ㄷ.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라도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유효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정답 ①

해설 [○] ㄱ, ㄴ이 타당하다. ㄷ은 옳지 못하다.

ㄱ:[○] 대판 2004.7.8, 2002두8350 참조

ㄴ:[○] 대판 2002.11.8, 2001두3181 참조

ㄷ:[×]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며 그 공매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대판 2012.2.16, 2010두10907).

11. 공법상 계약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 ②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 ③ 공익사업으로서의 사업인정 전의 토지 협의매수계약
- ④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

정답 ③

해설 [×] 공익사업으로서의 협의취득, 즉 사업인정 전의 토지협의매수계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대판 2012. 2. 23, 2010다91206).

12.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지도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 ② 말로 이루어지는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정답 ④

해설 [X]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은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80. 10. 27, 80누395).

13.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재산압류-압류재산매각-청산’으로 이루어진다.
- ② 체납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법률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청산 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강제징수절차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X] 압류는 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법률상 처분을 금지시키는 강제보전행위이므로, 체납자는 압류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14.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청이 선정한다.
- ② 「행정절차법」은 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③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은 법령상 청문실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X] 청문주재자의 선정에 있어 당사자의 신청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28조 제1항.

제28조(청문 주재자) ①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O] 행정절차법 제29조.

③:[O] 행정절차법 제30조.

④:[O]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인도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③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X]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19조 제2항).

16.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정치적 견해, 건강, 사상·신념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 ② 판례는 지문(指紋)을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③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개인정보보호법」은 단체소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②

해설 [X] 판례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식별정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지문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상의 지문날인제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침해한 것이 아니다.[합헌]

판례 “지문날인제도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범죄수사활동, 대형사건사고나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확인,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방지 등 각종 신원확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는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5.26, 2004헌마190).”

17.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의 요건이 되는 '위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 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의 기초가 되는 '공공의 영조물'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한다.
- ㄷ.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에 관하여는 명문의 헌법상 근거가 없다.
- ㄹ.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국회는 그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③

해설 [O] ㄴ, ㄷ이 타당하다. ㄱ, ㄹ은 옳지 못하다.

ㄱ:[X]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법령 위반'은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한다(대판 2008. 6. 12, 2007다64365).

ㄴ:[O]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은 본래의 의미의 영조물(인적·물적 결합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강학상 공물을 의미한다.

ㄷ:[O] 영조물 책임은 헌법에는 명문규정이 없고 국가배상법에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ㄹ:[X]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7.6.13, 96다56115).

18.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한 재결주문에만 미친다.
-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외의 다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
- ③ 심판청구에 대해 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O] 행정심판법 제49조 제4항.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①:[X]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주문 및 사유에 미친다.

판례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대판 2005. 12. 9, 2003두7705).

②:[X]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47조 제1항).**[불고불리의 원칙]**

제47조(재결의 범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③:[X] 행정심판은 재청구가 금지되므로(행정심판법 제51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9.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칙적으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 ② 취소소송이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대상 처분의 효력은 판결의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 ③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④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X] 취소소송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는 대상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고**[집행부정지 원칙]**, 별도의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0.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TV방송수신료 통합징수권한의 부존재확인은 당사자소송으로 다룰 수 있다.
- ②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시립무용단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당사자소송으로 다룰 수는 없다.
- ④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을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 수신료 부과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8.7.24, 2007다25261).

②:[×]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 참조).

※ 소의 변경,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직권심리주의, 소송참가,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제44조(준용규정) ①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1조(소의 변경) ①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5. 12. 22, 95누4636).

④:[×]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제12조)을 준용하지 않는 바, 민사소송법상의 예에 의한다. 즉,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항고소송에서와 같은 '법률상 이익'이라는 원고적격의 제한은 없다.